

DDA 2005년 7월 농업협상 동향

지난해 여름 WTO 회원국들은 다가오는 12월까지 모델리티(세부원칙)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각 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당초 협상 타결 시한인 홍콩 각료회의 시 모델리티 최종 합의문이 도출 가능성이 어두운 상황이다.

각 국은 7월 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가지고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으며, 곧이어 열린 대련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하였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향후 협상 성공 여부는 남은 기간동안 주요국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1.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이번 7월 회의는, 7월 12~13일 개최될 중국 다롄(Dalian)에서의 소규모 각료회의와 이어지는 7월 말 modality 1차 윤곽(first approximation) 제시라는 협상 흐름에 비추어, 제네바차원(협상실무차원)에서 농업협상 핵심 쟁점에 관해 회원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마지막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협상 첫 날, WTO 농업위 협상과 별도로 FIPs(미국, EU, 호주, 브

라질, 인도: Five Interested Parties)가 모여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에 대해 비공식회의를 진행한 결과, 각 국은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FIPs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알려지자 이후 WTO 농업위 협상(Room D 및 Room F)에서는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회원국들이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야는 시장접근분야로서 그 가운데 관세구간의 수나 경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관세감축공식의 성격(the structure of tariff reduction formula)을 둘러싸고 각 협상 그룹간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논의 동향을 볼 때 관세 구간의 개수는 3~4개로 압축되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60~100% 정도로 상당히 넓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관세감축공식에 있어서 EU와 G10이 UR공식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 등 케언즈는 특정 공식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채 구간내 progressivity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별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미국 등 수출국들은 감축공식의 성격으로서 구간내 progressivity(구간내에서 고율관세를 더 많이 감축)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수입국들은 구간내 관세감축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시장접근분야, 특히 관세감축공식에서 EU가 완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내보조나 수출경쟁에서 이루어진 기본적인 합의를 고려할 때 균형이 깨졌다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 EU는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지만 시장 접근분야나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ors)와 관련된 관심 사항들이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크게 반발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서 EU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보조는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된 반면, 미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신용이나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수출국영무역(STE: State Trading Enterprises)에 대해서는 수출보조만큼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보조에서 EU는 최상위 구간에 배치되어 가장 큰 폭으로 국내 보조를 감축 하게 되었으나 미국이 무역왜곡보조를 감축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New Blue Box에 대한 규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비농산물 협상에서 미국과 EU가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브라질, 인도가 이를 거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EU는 DDA 협상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농업협상 국내보조 분야, 수출경쟁 분야, 시장접근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협상이 균등한 수준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EU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GI 등이 농업협상에서 좀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제네바에서의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자 DDA 농업협상은 따렌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미 있는 1차 윤곽의 제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협상 흐름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결국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다.

특별회의가 끝난 이후 곧이어 12, 13일 양일간 중국 대련에서 소규모 각료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었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 많아져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7월말 modality 1차 윤곽 역시 지난 6월에 배포된 Groser의장의 협상평가 보고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Groser의장도 modality 1차 윤곽을 제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의미 있는 modality 1차 윤곽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도국 특별품목과 SSM의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채 특별품목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작업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으며, SSM은 8월 이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향후 DDA 농업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 이후 EU의 입장 변화 폭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농업분야와 서비스, 규범 등의 논의동향이 농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비농산물 협상(NAMA), 서비스, 규범 등의 협상그룹은 농업협상그룹의 진전 상태를 보고 협상을 진행해 가자는 분위기가 때문이다.

2. G20 제안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끝난 후 30개국 각료들은 중국 대련에서 12, 13일 이틀간 각료회의를 가지고 DDA 협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대련 각료회의가 특별한 진전 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협상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은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들에 관해 제안서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였다. G20은 관세구간의 경계와 수, 관세감축공식의 성격, 관세 상한 설정 등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서를 통해 미국과 EU가 각각 주장하던 바를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2.1.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

선진국의 경우 관세구간을 다섯 개로 나누고 그 경계를 20%, 40%, 60%, 80%로 정하였으며, 개도국은 관세구간을 네 개로 나누고 그 경계를 30%, 80%, 130%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관세 품목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은 100%의 관세 상한을, 개도국은 150%의 관세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관세감축공식으로는 구간별 선형감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개도국의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각 관세구간의 품목들은 해당 구간의 감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감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A국의 품목 B의 감축 전 관세율이 50%라면 품목 B는 x%를 감축하여 감축 후의 관세율이 $50 \times (100 - x)\%$ 가 된다.

표 1. G20의 관세 감축 제안

	선진국		개도국	
관세 구간 수	5		4	
관세 구간	경계	선형감축	경계	선형감축
	$0 \leq 20$	$v\%$	$0 \leq 30$	$< v$
	$>20 \leq 40$	$w\%$	$>30 \leq 80$	$< w$
	$>40 \leq 60$	$x\%$	$>80 \leq 130$	$< x$
	$>60 \leq 80$	$y\%$	>130	$< y$
	>80	$z\%$		
관세 상한	100%		150%	

이 제안서에서 G20은 관세 상한을 설정하여 고관세 품목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는 한편 EU의 민감품목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60~70% 관세구간이 차상위 구간에 배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EU가 이 제안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2. 민감품목

한편 각 국은 세번의 x단위를 기준으로 N개의 관세라인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N은 매우 작은 수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 벗어날수록 TRQ 증량폭과 관세감축폭이 커지도록 하였다.

2.3. 기타

G20은 TRQ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또 다른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TRQ 관리방식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 MFN 방식에서 시장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20은 선진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인 SSG(Special Safeguard)가 이행 초기에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20은 개도국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가 개도국의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다수의 개도국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와 관련해 G33 국가들(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등)을 포함해 이해 관계가 있는 여타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G20은 제안서에서 모든 비종가세를 종가세를 영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선진국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사관세(가공도에 따라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를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